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66

발의연월일: 2020. 8. 25.

발 의 자: 박재호 · 전재수 · 최인호

김정호・허 영・김수흥

한병도 • 위성곤 • 정춘숙

이상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촬영해 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음.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'신체'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,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.

대법원은 위 조항의 해석상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.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 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재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간 피해의 정 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처벌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 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 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 중 "신체"를 "신체(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포함한다)"로, "그 촬영물을"을 "또는 그 촬영물을 재촬영하여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촬영물을"을 "촬영물 또는 재촬영물을"로 한다.

다만, 공중을 상대로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·상영할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경우는 제외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	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	①
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	
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	
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	
람의 <u>신체</u> 를 그 의사에 반하여	신체(거울 등 다른 물체에
촬영하거나 <u>그 촬영물을</u> 반포	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
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	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
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5년	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
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	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
하의 벌금에 처한다. <단서 신	신체 이미지를 포함한다)
<u>설></u>	<u>또는 그 촬영</u>
	물을 재촬영하여
	<u>다만,</u>
	<u>공중을 상대로 반포·판매·임</u>
	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
	시·상영할 목적으로 촬영대상
	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경우
	는 제외한다.
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	2

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여	ᅦ	반
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	사	·후
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	물	을
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	또	는
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	자	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)만	·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	

③ (생 략)

	_
	_
촬영물 5	드
는 재촬영물을	_
	_
	_
<u>.</u>	
③ (현행과 같음)	